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의원 발의)

의 안 번호 6291

발의연월일: 2024. 12. 9.

발 의 자:김용민 의원

찬 성 자:169인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함.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내 란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경우,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 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 아직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경찰은 12월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경찰청장·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고발되어 있어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 벌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 (안 제2조).
-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각각 1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선정하여,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

- 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봄(안 제3조).
-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8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 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수 있고 그 기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법률 제 호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하여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하였다는 의혹사건
 - 2.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 사건
 - 3. 법무부 교정국 소속의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4.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하여 국회의원 및 정치인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 5.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 등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등에 대한 불법체포를 감행하는 등 내란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의혹사건
- 6.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7.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1공수여단,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병력 등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법체포를 시도하였고 시민, 국회보좌진 및 국회직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상해를 입혔고 국회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8. 국회 본회의 무산 및 국회의원 체포 등을 위하여 국회 경내에 실 탄을 소지한 중무장 계엄군 및 전투용 헬기 투입, 장갑차 국회 진 입 시도 등의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9. 무장한 계엄군이 국가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청사와 연수원 등을 점령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당 직자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으며, 서버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를 출입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10.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회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사건
- 11.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계엄해제를 위한 국 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사건
- 12.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 여한 행위 및 그 범인 도주·은닉, 범죄은폐, 증거인멸 행위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및 특별검사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 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 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 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2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을 각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3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른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 무원
 -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 4. 정당의 당원이거나 특별검사 임명일 기준 1년 이내에 당적이 있었던 자

-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 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군검찰단, 각 군 검찰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 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

-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4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의 수는 80명 이내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 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

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한다.

-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80명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 안에서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4항·제5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 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 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특별검사는 수사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 필요한 예산에 관하여 지급해야 할 기한을 정해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검사가 요구한 예산을 요구기한 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는 제4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

- 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4항의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 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⑦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 · 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 · 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이 비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 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 다.
-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등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 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하여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 제19조(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및 이를 준용하는 제2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정보원과 군은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 제20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 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1조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

- 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수있다.
- 제22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

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8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